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한 이해



김천옥

한일세무법인 대표이사

haniltaxkim@yahoo.co.kr

I. 서론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가액의 10%를 다음 단계의 구입자에게 전가하여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조세이다.

이때까지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5호에 의하여 면세용역으로 취급되어 최종소비자가격(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 30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대통령령제22578호)가 개정되므로 인하여 2011월 7월 1일부터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동물 진료용역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의한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계속 면세이다. 이하 “가축진료용역”이라고 한다.)이 과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2011월 7월 1일부터 수의사가 과세대상이 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때에는 기존 진료비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결국 소비자들은 진료가가 10% 만큼 인상되는 결과를 안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제도와 면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수의사가 제공하는 가축진료용역의 경우에는 계속 면세되고 있으므로, 전단계에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기 위하여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구분하여 안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원활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수의사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부가가치세의 개념

1. 부가가치세 의의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 중에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가액¹⁾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에 매입가격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2. 면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가가치세란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모두 과세함이 원칙이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에 최종소비자의 전단계에 있는 사업자(수의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는 사업자(수의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에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히 소비자 단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다.

3. 과세와 면세의 차이점

(1) 매출세액

과세의 경우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므로 매출세액이 “0”이 된다.

(2) 매입세액

과세의 경우 매입세액은 매입가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되어 지불된다. 이때에 지불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면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면제(0)되므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함께 지불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게 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만큼이 원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 원가 부담액(매입 부가가치세)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면 면세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란 통상일반인들이 말하는 매출금액을 말하며 이때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비슷한 “공급대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매출액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한다.

※ 다음의 예를 통하여 과세사업자인 경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차이점을 설명하겠다.

예1) 수의사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약품도매업자			수의사(과세)			소비자		
구 분	공급가액	세 액	구 분	공급가액	세 액	구 분	소비자가격	부가세
매 출	10,000	1,000	매 출	12,000	1,200	매 입	12,000	1,200
매 입	8,000	800	매 입	10,000	1,000			
납부세액		200	납부세액		200			
이 익	2,000		이 익	2,000		실제부담액	13,200	

수의사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약품도매업자로부터 약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1,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200원에서 약품도매업자에게 지불한 1,000원을 공제하고 2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수의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보관하였다가 납부할 뿐 추가적인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다. 결국 수의사는 소비자로부터 12,000원을 받고 약품도매상에게 10,000원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수의사의 이익은 2,000원이 된다.

예2) 수의사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약품도매업자			수의사(면세)			소비자		
구 분	공급가액	세 액	구 분	공급가액	세 액	구 분	소비자가격	부가세
매 출	10,000	1,000	매 출	12,000	0	매 입	12,000	
매 입	8,000	800	매 입	11,000				
납부세액		200	납부세액					
이 익	2,000		이 익	1,000		실제부담액	12,000	

수의사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출세액은 면세(0)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약품소매업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 1,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약품도매업자에게 지불하였던 부가가치세 1,000원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약품구매대금 10,000원에 가산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의사가 약품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구입원가는 약품대금 10,000원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000원을 가산한 11,000원이 되므로 수의사의 이익은 1,000원(12,000원-11,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의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한

다는 것은 수의사의 이익을 1,000원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최종소비자에게는 1,200원의 소비자가격 인상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수의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진료가액 12,000원 이외에 부가가치세 1,2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다. 만일 최종소비자에게 면세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12,000원을 똑같이 받는다면 1,000원의 부가가치세는 수의사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수의사의 이익은 약 1,000원정도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의무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의사의 경우에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므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게 된다.

(4)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과세사업자 중 법인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4월 25일(예정신고), 7월 25일(확정신고), 10월 25일(예정신고), 익년 1월 25일(확정신고), 즉 한 해에 네 번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와 동시에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및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일인 4월 25일과 10월 25일에는 세무서로부터 전기분세액의 2분의 1이 고지되며, 1년에 7월 25일과 익년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하므로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물론 이때에 종이매출세금계산서 및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개인도 반드시 법인의 경우와 같이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및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Ⅲ. 부가가치세의 신고방법

1. 신고대상 금액의 범위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진료용역 중 가축 및 수산동물의 진료용역을 제외한 진료용역은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에 과세되는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다.²⁸⁾ 또한 과세되는 진료용역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도 과세되는 것이다.

2.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납부 할 세액 계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매출세액의 계산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10% = 매출세액

B. 매입세액의 계산 : 공급받은 가액 × 부가가치세율 10% = 매입세액

C. 기타 공제 매입세액의 계산 :

-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 의제매입세액공제율³⁾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취득가액 × $\frac{6}{106}$ (중고품 $\frac{10}{110}$)

D. 경감 공제 세액의 계산 :

-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 발행 · 결제금액⁴⁾의 1.3% (한도연간70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 (한도 연간 100만원)

E. 기 납부 세액의 계산 :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생한 환급세액⁵⁾

- 예정고지세액 = 예정신고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

F. 가산세의 계산 : 후술하는 「5.가산세」란 참조

2) 국세청 예규 부가가치세과-692(2011.06.30)

3)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업종	개인	법인
음식점업	8/108	6/106
과세유통장소영위사업	4/104	4/104
위 이외의 업종	2/2	2/102

4)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5)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시 환급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으로 차감한다.

G. 납부 할 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기타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세액공제액을 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된다. 이때에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된다.

〈표 1〉 일반과세자의 납부 할 세액 계산표

A. 매출세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10%)
B. 매입세액	= 공급받은 가액 × 부가가치세율(10%) ○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
C. 기타공제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D.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 발행세액공제 ○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E. 기납부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F. 가산세	사업자미등록, 세금계산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G. 납부할 세액	G=A-B-C-D-E+F

3.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예:애완동물 진료용역)과 면세사업(예:가축 등 진료용역)을 겸업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 용역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분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구분하는 것을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1)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공급가액을 안분계산 한다. 이렇게 안분하여 계산된 과세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10%가 매출세액이 된다.

$$\text{과세사업에 대한 과세표준} = \text{공급가액} \times \left(\frac{\text{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text{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right)$$

예) 2011년 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의료용 기구를 1천만원 (부가세제외)에 매각한 경우 매출세액을 구하는 방법

과세사업의 예 : 애완동물의 진료용역, 미용용역, 사료소매

면세사업의 예 : 가축⁶⁾ 또는 수산동물⁷⁾의 진료용역(소, 돼지 등)

과세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계
2010년 2기(전기)	6천 만원	4천 만원	1억원
2011년 1기(당기)	7천 만원	3천 만원	1억원

$$\text{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 1\text{천만원} \times \frac{6\text{천만원}}{1\text{억원}} = 600\text{만원}$$

$$\text{매출세액} = 600\text{만원} \times 10\% = 60\text{만원}$$

→ 즉 의료용기구 1,000만원 짜리를 매출하였을 때 6십만원은 과세사업에서 매출하는 세액으로 보고, 4십만원은 면세사업에서 매출한 것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한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에도 사용되고 면세사업에도 사용되는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할 수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과세사업에 속하는지 면세사업에 속하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text{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text{공통매입세액} \times \left(\frac{\text{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text{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right)$$

예) 2011년 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의료용기구 1천만원(매입세액 100만원)짜리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구하는 방법

과세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계
2010년 2기(전기)	6천 만원	4천 만원	1억원
2011년 1기(당기)	7천 만원	3천 만원	1억원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항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7)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조 제4항 “수산생물”이라 함은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과 그 알 또는 포자를 말한다.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 = 100만원 × $\frac{3천만원}{1억원}$ = 30만원

→ 즉 의료용기구 1,000만원 짜리를 구입하였을 때 발생한 100만원의 매입세액중 3십만원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게 되고, 7십만원원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3)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1)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됨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②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③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해당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됨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③ 동일과세기간에 매입하여 매각하는 경우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4.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영위하던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1.7.1. 전에 매입하여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의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때에 사업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

에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매입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되는 매입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5. 가산세

가산세란 납세의무자들이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담보할 할 목적으로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각 세법에서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아래 <표 2>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에서 각 세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성실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서 요약한다.

<표 2>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일반 무신고 ② 일반 과소신고 ③ 일반 초과환급신고	산출세액 × 20% 산출세액 × 10% 산출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환급받은 때	일일 3/10,000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①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② 미발급(공급시기에 미발급) ③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령 ④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수령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2% 공급가액 × 2% 공급가액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①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② 지연제출 (예정신고시 제출할 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0.5%

구분	작용대상	가산세액
등록불성실가산세	미등록가산세	공급대가 × 0.5%
현금매출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	① 전문자격사업자가 미제출, 수입금액 허위기재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수입금액 허위기재 ⁸⁾	수입금액 × 1% ⁹⁾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 미납부	불이행세액 × 1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미달신고 ② 영세율첨부세류 미제출	공급대가 × 1%

IV.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자

아래와 같은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자로서 반드시 가맹점에 가입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1) 법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2)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이상인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공인노무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표 3>에 해당되는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8)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

9) 2010년 6월 30일까지는 0.5%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또한 의사, 수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 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 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 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 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2. 현금영수증 수수효과 및 세법상 혜택

(1)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발행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거래건별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발급 건당 2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발급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가산세 및 과태료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소득세 추징과는 별도로 미발급 금액(30만원 이상의 경우)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한편,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이다. 이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하여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¹⁰⁾

따라서 수의사업을 비롯한 전문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혹시 상대방이 영수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과태료의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게 될 것이다.

〈표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규정

	30만원 이상 거래시	30만원 미만 거래시
가맹점 미가입시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거부 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 미가입기간에 일수계산의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배제·각종 세액감면배제	
거래상대방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발급
거래상대방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	발급의무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한다.)	변호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직 및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등은 미발급거래에 대해서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다.
발급거부 시	3회 이상으로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발급한 것으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부 감면조항 배제 및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미발급시 제재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금액의 1% 가산세
신고포상금	미발급금액의 20% (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발급거부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10) 국세청고시 제2010-5호 (2010.03.26)

Ⅶ.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법인인 경우에는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¹¹⁾

2.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혜택

전자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포함) 발급 및 전송에 따른 발급세액 공제로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1)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e-mail)하는 방법이다.

(2)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사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ASP) 또는 대법인들이 구축한 ERP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3) 기타 발행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전화ARS방식[국번 없이 126](*보안카드 세무서에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이다.

4. 전자세금계산 발급에 따른 주의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11) 부가세법 제16조, 부가세법시행령 제53조의2

(3)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시 가산세 부과

구분	가산세율(원칙)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복식)
		2011~2012년	2012~2013년
미발급	2%	2%	2%
지연 전송	0.5%	0.1%	0.1%
미전송	1%	0.3%	0.3%

※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달 16일~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 미전송 :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면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교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입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비교란에 계약해제일을 기입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④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비교란에 “기재 사항착오정정”이라고 표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준비사항

(1) 공인인증서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 ASP, ERP)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 생성)을 위해 공인인증서(*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국세청과 이용 협의된 ASP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거래처 e-mail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V.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한 준비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수의사가 면세사업자로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의 진료용역 등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은 면세사업자 등록증이므로 이를 ‘과세사업자 등록증’으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즉 면세사업개시(2011.7.1)후 20일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정신고서의 상단 여백에 “세법개정에 의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이라고 표시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신고기간 중 과세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사업용계좌의 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는¹²⁾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준비

수의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애완동물의 진료용역 등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 구분 기장

과세대상이 되는 진료용역 등과 가축 등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을 구분하여 기장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5.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과세대상이 되는 진료용역에 직접 소요되는약품, 기자재 등은 과세사업비용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한다.

12) 수의사의 경우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VI. 결론

이상 201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제도와 면세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다.

첫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되는 매출세액이나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한다.

셋째, 면세사업에 사용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한다.

넷째, 수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에는 고객의 요청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에 면세사업자이었던 경우에는 겸영사업자가 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여섯째, 수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제공 : 한일세무법인 <http://www.haniltax.com>